

한의학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지침

제1절 조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지학원 정관, 상지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에 따라 한의학대학의 기본 행정 조직을 정하고 체계 있는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한의학대학에 한의예과, 한의학과를 둔다.

② 한의학대학에 한의학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한의학교육실을 둔다.

제3조 (학장) ① 한의학대학에 학장을 두며, 자격은 부교수 이상의 한의학대학 소속 일반교원으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학장은 한의학대학의 교육, 연구, 학생 및 행정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의학대학을 대표한다.

③ 학장은 한의학대학에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예산의 편성, 배분,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

제4조 (학과장) ① 한의예과와 한의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한의학대학 소속 일반교원으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과장은 학과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학과를 대표한다.

③ 한의학과장은 한의학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 및 점검을 담당하며, 연구와 관련한 외부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④ 한의예과장은 한의학대학의 학생지도와 장학, 한의예과 입학을 담당하며, 학생 지도워크숍, 학생과 입시에 관련한 외부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제5조 (교육실장) ① 한의학교육실의 실장(이하 “교육실장”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한의학대학 소속 일반교원으로서 한의학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교육실장은 한의학교육실의 운영을 관장하고 한의학교육실을 대표한다.

③ 교육실장은 한의학대학의 교육과정 전반과 교수법, 학생평가를 담당하며, 교육과 관련한 외부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제6조 (교육부장) ①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교육연구부장(이하 “교육부장”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한의학대학 소속 일반교원 중 임상교원으로서 한방병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은 한의학대학 학생의 임상실습 운영을 관장하고 임상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제7조 (교학팀장) ① 한의학대학에 교학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학팀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한의과대학의 사무로 분장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업무

제8조 (한의과대학 교학팀) ① 한의과대학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장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3. 전임교원 초과시간 및 외래교수 출강시간 관리에 관한 사항과 휴·결강 통계에 관한 업무
4. 수업진행 확인 및 관리(휴·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출·결석에 관한 사항
6. 학생 취업 추천에 관한 사항(단과대학장 명의 발급)
7. 강의 진행 및 시험 진행, 강의실 관리에 대한 협조 업무 사항
8. 강사 제청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
9. 취업, 홍보물 게시 협조 업무 사항
10. 학생상담 및 지도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
11. 학생 상·벌에 관한 상신 및 협조 업무 사항
12. 학생 과외활동 지도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
13. 분담 지도교수제 관리 운영 및 협조 업무 사항
14. 단과대학별 행사 계획 및 집행 결과 협의에 관한 사항
15. 단과대학·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간행물 발간 지도와 협조 업무 사항
16. 실험실습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7. 실험실습기구 보관관리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
18. 현장실습 및 견학 계획

19. 대학 내 비품 관리에 관한 협조 업무 사항
20. 우편물 전달
21. 교수업적평가 실적에 대한 1차 심의와 관련한 업무
22. 교원의 국내·외 출장 중 사무에 관한 사항
23. 학과소속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24. 학적(휴학, 복학)에 관한 사항
25. 계약학과에 관한 사항
26. 학과·학문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27. 학과단위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28. 단과대학·학과 학생교외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한의과대학 교학팀, 한의학과, 한의예과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조교의 업무는 한의과대학 교육 및 실습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제9조 (한의학교육실) ① 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2.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 개편 및 평가
3. 강의계획과 신교육기법, 교수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한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
5. 기초종합시험, 임상종합시험, 임상술기평가(OSCE, CPX 등)의 시행
6. 졸업역량 평가결과의 분석 및 피드백
7. 한의과대학의 CBT(Computer Based Test, 이하“CBT”라 함)시행 및 운영체제 관리
8.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위 9항에 부수되는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3.08.28.)

1. 한의과대학 사명, 졸업성과, 핵심역량의 개정 및 변경시 홍보
2. 한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관련업무
3. 제3절 제 위원회

제10조 (한의학대학 교수회) ① 한의학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한의학대학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회는 한의학대학 일반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각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3. 입학, 시험, 졸업 및 학업수료, 학생지도, 교육환경 및 시설,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의학대학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수회 의장은 학장이 되고, 학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교수회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11조 (한의학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① 한의학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구성

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의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등 당연직과 전임교원, 산업 체 인사 및 학생대표를 포함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학생대표 위원은 1년으로 한다.

③ 한의학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년별, 학기별 전공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

3. 학과 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전공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학과 전공교과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위원장은 한의학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 고 의장이 된다.

⑤ 한의학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2조 (한의학대학 발전추진위원회) ① 한의학대학 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을 7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한의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중임할 수 있다.

④ 한의과대학 발전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분석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한의과대학 발전계획 관련 재정에 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한의과대학 발전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심의한다.

제13조(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 ① 한의과대학에 한하여 유급 및 졸업대상자의 성적에 관한 사항은 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한의학교육실장, 부속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등 당연직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며, 한의학과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는 유급 대상자의 수강과목 성적산출 결과, 졸업대상자의 졸업종합시험(기초교육역량종합평가, 임상교육역량종합평가, 임상술기종합 평가) 성적산출 결과를 검토하여 유급의 적부 여부, 졸업에 필요한 기준성적의 통과 여부를 심의한다.

④ 사정시기는 학기말 성적입력기간부터 최종성적 정정기간 까지로 하며,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성적사정위원회의 성적사정이 종료된 후 위원장은 유급대상자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2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